

『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
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8월 31일

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 조 문 배

나. 제안이유

- 대상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,
-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정비된 가로망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공간 기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바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정비사업의 명칭 :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○ 정비구역 및 면적

- 위 치 :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42-1번지 일원(면적 28,000㎡)

○ 토지이용계획

- 용 도 : 제1종 일반주거지역

- 정비구역 (단위 : ㎡, %)

구 분	계	주거용지	공공시설용지		
			계	도 로	경로당
면 적	28,000	22,641	5,359	4,710	649
구성비	100	80.86	19.14	16.82	2.32

라. 참고사항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○ 구미 장천면 상장리 94-1번지 일원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지구는 28,000㎡로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,

○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정비된 가로망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기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바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도로개설시 준공 후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, 통신, 상수도 등 관련기관과 사업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,

○ 아울러, 사업시행 시 도로우수처리를 하천 홍수위와 연계 검토하여 내수배제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
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의견서

□ 사업 개요

1. 사업명 :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2. 위치 :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42-1번지 일원(면적 28,000㎡)
3. 토지이용계획
 - 용도 : 제1종 일반주거지역
 - 정비구역 (단위 : ㎡, %)

구분	계	주거용지	공공시설용지		
			계	도로	경로당
면적	28,000	22,641	5,359	4,710	649
구성비	100	80.86	19.14	16.82	2.32

□ 의견 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업무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
-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, 통신, 상수도 등 관련 기관과 사업시기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
- 사업시행 시 도로우수처리를 하천 홍수위와 연계 검토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.